

계 열 문 항 1

〈가〉

타자 담론은 식민 주체의 구성을 바탕으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는 방편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국에 대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 작업의 필수 요소가 된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공간적 차이를 설정하는 장소의 문제와도 관계를 맺는다. 타자 담론은 재현 및 장소의 문제와 제국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타자 담론은 무엇보다 문화 간의 차이를 관계적 현상이 아니라 절대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타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최적의 수단이 된다. 문화와 문화의 관계에서 한 문화의 정체성은 바로 자아를 타문화로부터 구분하는 방식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확보되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성이 서구가 지닌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과학·문화·정치 등의 제 분야에서 서구가 구축한 지식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자기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은 타자 담론을 보증하는 확실한 지표이다. 결국 세계를 서구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식민주의는 식민 지배자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의 원주민은 야만과 비이성의 특징을 가진 식민주의 담론의 대상이 된다. 이질적인 공간의 원주민은 야만인이며 동물과 같은 존재일 뿐, 서구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 세계 바깥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규정하는 식민주의적 사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 세계에 존재했던 뿌리 깊은 전통이다. 야만인을 뜻하는 영어 ‘barbarian’의 어원은 그리스어 ‘barbaros’에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종족을 자신들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다. 원래 ‘낮선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란 뜻의 이 용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타자를 비이성적인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시작으로 ‘야만인’은 이후 서구가 만들어낸 타자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타자 담론은 타문화의 폄하를 통해 폭력과 침략, 정복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

나는 내가 발견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이 페르디난도 코르테스*가 벌거벗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쉬운 일인지 의심이 든다. (……) 물론 내가 발견한 나라들을 국왕 폐하의 영토로 개척하자는 주장에 대해 내가 소극적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다소 망설임을 가진 사람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해적 일당이 폭풍우 탓에 미지의 세계로 밀려갔다고 치자. 마침내 한 소년이 중간 돛대에 올라가 육지를 발견한다. 그들은 강탈과 약탈을 목적으로 그곳에 상륙한 뒤, 순진무구한 원주민들을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그들은 그 나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국왕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공식적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기념으로 그곳에 썩은 판자나 돌을 세운다. 그들은 또 이삼십 명의 원주민들을 살육하고 그들 중 한 쌍을 강제로 모국으로 데리고 돌아와 사면을 받는다. 그럼 이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그들 나라의 새 영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시 함대가 파견되고, 원주민들은 추방되거나 학살된다. 그곳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황금을 내놓으라고 고문을 당한다. 비인간적이며 탐욕적인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허가장이 제공된다. 그 나라의 대지는 원주민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든다. 이런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인들을 개종시키고 교화하기 위해 보내어지는 오늘날의 식민지 건설자인 것이다.

* 스페인의 하급 귀족 출신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인물.

〈다〉

길동은 벼 일천 석을 얻어 삼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조선을 하직해 큰 바다에 배를 띄워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사에 힘쓰며, 재주를 배워 무기 창고를 짓고 군법을 연습했다. 이곳은 본래 깊고도 아늑한 곳이라 누구도 알 사람이 없고 풍족했다. 하루는 길동이 화살촉에 바

를 약을 구하러 배를 띄워 망당산으로 향했다. (……) 길동이 망당산을 향하여 약을 캐며 깊이 들어가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길동이 어찌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마침 사람 소리가 들리며 등불 빛이 밝게 비치는 것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이 아니라 괴물 여럿이 무리를 지어 앉아 서로 지껄이고 있었다. 가만히 엿보니, 그 모습은 비록 사람이나 짐승의 무리가 분명했다. 원래 이것은 ‘울동’이라는 짐승인데, 여러 해 동안 산속에 있어 변화가 무궁했다. 길동이 생각하기를 ‘내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같은 것은 처음 보는 것이다. 이제 저것을 잡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하고 몸을 감추어 활을 쏘니, 그중에 우두머리 놈이 맞았다. (……) “우리는 이곳에 산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지난밤 잔치를 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재앙을 맞아서 위중하다. 그대가 명이라고 하니 선약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받으리라.” 길동이 듣고 생각하였다. ‘이놈이 어젯밤에 내 화살에 다친 놈이로구나.’ 길동이 허락하였다. (……) 길동이 평소 온갖 환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때 그중 독한 약을 찾아내어 작은 요괴에게 주며 말했다. “이 약을 급히 갈아 써라.” 모든 요괴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더운물에 갈아 먹이니, 잠시 후에 대왕이 배를 두드리고 눈을 실룩이며 소리를 지르다가 두어 번 뛰어오르더니 죽었다. 작은 요괴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모든 요괴가 아무리 천 년을 묵어 조화를 부린다고는 하나 어찌 길동의 신기한 술법을 당하리오. 한바탕 싸움으로 모든 요괴를 다 죽이고, 도로 요괴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 남은 요괴까지 모조리 죽였다. (……) 세월이 물같이 흘러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연습하며 농업에 힘쓰니, 불과 몇 년 사이에 군대와 곡식이 모두 풍족해졌는데, 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울도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 그 넓이는 수천 리요, 사방이 막혀 있어 과연 견고하고 풍요로운 나라였다. 길동이 매양 이곳에 뜻을 두고 왕위를 빼앗고자 했는데, 이제 기운이 활발하여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루는 길동이 사람들을 불러 의논했다. “내 처음 사방으로 다닐 적에 울도국에 뜻을 두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마음이 크게 움직이니 운수가 열렸음을 알겠노라. 그대들이 나를 위해 군대를 징발하면 울도국 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것이니, 어찌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겠는가?” 길동이 스스로 선봉이 되어 정예군사 오만 명을 거느리고 날을 정해 출병하니, 이때는 갑자년 음력 9월이었다. (……) 격서를 써 울도 왕에게 전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의병장 홍길동이 글월을 울도 왕에게 전하노라.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이러므로 탕왕이 걸을 정벌하시고 무왕이 주를 정벌하신 것은 하늘의 이치로 자연히 된 일이라. 내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울도국을 치매, 먼저 철봉성에 항복받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니 지나는 곳마다 투항하지 않은 자가 없었도다. 이제 왕이 싸우고자 하면 싸우고, 그렇지 아니하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울도 왕이 끝까지 다 읽은 후 놀라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철봉성을 믿고 지내왔거늘, 이제 철봉성을 잃었으니 어찌 적의 형세를 당하리오.”하고는 자결하니, 세자와 왕비가 따라 모두 자결했다. 길동이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을 위로하고 소와 양을 잡아 여러 장수와 군졸에게 배풀었다. 길동이 왕위에 오르니, 때는 을축년 정월 28일이었다.

1.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인 태도를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2

〈가〉

세계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두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나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globalized localism)고, 다른 하나는 ‘지역화되는 세계주의’(localized globalism)다. 전자는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난 현상이 세계화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영어의 만국공용어화, 미국의 패스트푸드 또는 팝뮤직의 세계 정복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이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는 현상 등이 있다. 법의 영역에서 세계화는 서구의 상거래 방식, 과학 기술, 법적 기술 등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는 특정한 지역 국가들의 조건과 구조, 사람들의 행위가 초국가적 영향에 대응하여 해체되고 재구조화되는 변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외국인의 관광이 남미 지역 국가들의 토착 수공업에 영향을 미쳐 수공업의 방향과 구조가 바뀌는 현상, 초국가적 거래 현실에 발맞추어 한국의 상업관련 법이 변화하는 현상, 이른바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농업 분야에서 추진되는 무역 자유화의 흐름 등이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구조의 세계화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화에서는 일종의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세계화로 묘사되는 세계 체계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구성된 일종의 그물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들은 세계화되는 지역주의를 수행하며, 후진국들과 발전도상국들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를 선택하도록 강제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세계 체계 내에 있는 중심 국가들, 주변 국가들, 반(半)주변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관계로 이루어진 위계질서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고착화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측면을 ‘체계 순응적 세계화’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화되는 지역주의나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하버마스의 표현법을 적용하여 확대해 보면, ‘체계가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는 현상’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 심화되어 관철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계화란 중심 국가들에서 작동하는 경제시장 및 행정의 논리가 주변 국가의 체계와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과정에 이른다. 이렇게 파악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자본을 우위에 두는 반자유적,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지배 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은 각국의 고유한 법 문화를 해체하고 주권도 경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자유로운 무역을 목표로 삼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으로 이루어진 무역규범을 회원국에 적용한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 조치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하고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WTO 체제는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차별의 철폐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각국은 자기 나라의 무역 상대국들을 모두 똑같이 대 해주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자국 상품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직접적 차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 정책의 간접적 효과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조치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TRIPs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협정은 국가가 특허권 등록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였을 뿐 아니라,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등의 증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을 약화시켰다. 특히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국가 권한의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강한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도하 협정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이루어졌다.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야기한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할 경우, 예를 들어 구매자가 도저히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각국이 ‘강제실시’ 제도를 시행하여 특허권 여부와 상관없이 복제 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란 쉽지 않다. 2006년 브라질에서, 2007년 타이에서, 강제실시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드러났다. 당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강제실시 착수를 멈추지

않으면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2001년에도 국내에 만연한 에이즈에 대처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복제 약을 쉽게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제약회사들은 TRIPs를 위반하는 국내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제소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제소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런 위협은 여전하다.

WTO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인권을 위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GATT에는 인권과 연결되는 조항으로 제20조가 있다. 이 조항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보다 ‘비(非)교역성 공공 가치’를 예외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조치로, ‘공중도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인간, 동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공급이 부족한 제품을 획득하거나 분배하는 데 불가결한 조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 조항의 발동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정당화되려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을 덜 제한하는 다른 어떤 대안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제시하기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인권이 무역의 뒷전에 놓이기 쉽다.

〈다〉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대비 최소 20%’에 해당하는 분량의 치료제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유력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공장을 완전히 가동해도 WHO 권장량에 맞추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너무 커지자 선진국이 앞다퉈 타미플루 확보 경쟁에 나섰다. 로슈의 타미플루 연간 생산량이 4억 명의 인구가 복용할 수 있는 분량밖에 되지 않자, 타미플루는 최고 4~5배나 폭등한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남미 국가에서는 9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2009년 당시 한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신종 플루 치료제는 500만 명분이었는데, 이 중 비축한 220만 명분은 유효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 시기에 신종 플루의 본격적인 대유행이 예상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바로 공급 부족 때문이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를 받은 발명품을 타인이 사용, 즉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물론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도 않고, 특허권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있다.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질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혹은 공급이 불충분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클 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특허의 전부이기에, 특허권자가 생산과 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독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도 쉽기 때문에 독점이 깨질 경우 가격이 독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는 강제실시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킨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생산을 독점한 상황에서 약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제약회사는 구매할 능력이 있는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약을 공급한다. 이로 인해 질병의 공격을 받아도 부유한 사람은 피해 가고 가난한 사람만 당하는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AZT)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돼 현재 선진국에서는 에이즈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처럼 다스리고 있음에도, 매년 200만 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사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2.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의 상황이 초래된 요인을 분석하시오. (1,000±100자)